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17	유동수의원 등 10인	2025. 10. 3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5. 11. 24)
				소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2214345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5. 11. 18.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11. 24.)	
				소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2215327	김승원의원 등 11인	2025. 12. 17.	소위원회 직접회부(2026. 3. 31.)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나.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특례) ①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이하 “채무조정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 · 보험 · 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 · 소득 ·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② 채무조정기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기구의 요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채무조정기구는 제2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조회 방법과 정보가 제공 또는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의 특례) ① 보 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이하 “채무조정업무”라 한 다)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 다)은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 · 보험 · 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 · 소득 ·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채무조정기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기구의 요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채무조정기구는 제2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용정

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조회 방법과 정보가 제공 또는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

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